오산시의회 공고 제2021-36호

오산시의회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년 12월 31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(장인수 의원 대표발의)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전부개정(2022.01.13.시행)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함.
-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,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.
- 나. 복무 선서 및 책임완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2조 및 제3조).
- 다. 근무기강 확립 및 비밀엄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.
- 라. 공무원의 친절·공정한 업무처리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.
- 마.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8조).
- 바.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 및 제11조).

사. 공무원의 휴가(연가, 병가, 특별휴가)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).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○ 제출기일 : 2022년 1월 6일까지

○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
○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
○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
· 우편번호 : 447-701

·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
· 전 화: 031)8036-8023, · 팩 스: 031)375-2875

·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자치법규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	:	오산시의회	지방공무	원	복무	조례인	}
의견제출자							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	여 부	의	견	비고	
	찬성	반대	<u> </u>	· u	M 35	

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

(장인수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제8-624호

발의년월일 : 2021년 12월 30일

발 의 의 원 : 장인수, 김영희, 김명철, 이상복,

성길용, 이성혁, 한은경 의원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전부개정(2022.01.13.시행)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함.
-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,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.
- 나. 복무 선서 및 책임완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2조 및 제3조).
- 다. 근무기강 확립 및 비밀엄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.
- 라. 공무원의 친절·공정한 업무처리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.
- 마.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8조).
- 바.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 및 제11조).
- 사. 공무원의 휴가(연가, 병가, 특별휴가)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).

□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라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복무 선서) ①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은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오산시의회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.
 - ③ 선서의 방법,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.
- 제3조(책임완수)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 다.
- 제4조(근무기강 확립)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.
 -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5조(비밀엄수)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- 1.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
 - 2.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수 있는 사항
 - 3.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 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
 - 4.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

할 필요가 있는 사항

- 제6조(친절·공정한 업무 처리)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,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, 친절하고 신속·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 야 한다.
 -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- 제7조(근검·절약)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 성하여야 한다.
 -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 야 한다.
- 제8조(당직 및 비상근무)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·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·숙직·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,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② 의장은 전시·사변,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 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,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**제9조(당직수당)**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0조(겸임)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 직기관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 다만,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 -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

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- 제11조(파견근무)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 -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 - ③ 국외의 정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재외공무원 복무규정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.
- 제12조(해임, 파면,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) 해임, 파면, 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- 제13조(복장 등)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.
 -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칙」 제4장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"은 "공무원"으로, "중앙행정기관의 장" 및 "각급 기관의 장"은 "의장"으로 본다.

제2장 휴가

- 제14조(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)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.
- 제15조(연가계획 및 허가)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·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 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,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.
-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지각·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.
 -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
- 제17조(병가) ①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·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, 제 16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.
 - 1.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 - 2. 감염병으로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
 - ② 의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
 - ③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제18조(특별휴가) ① 의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을 받으면, 별표 5 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.
 - ② 의장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.
 - 1. 사용한 날(日)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,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 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.
 - 2. 월(月)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

한 것으로 계산한다.

- 3. 월(月)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(다만,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).
- ③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」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단,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.
- ④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
- 1. 「상훈법」에 따른 훈장·포상을 받은 때
- 2. 정부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
- 3. 청백봉사상 표창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의 표창을 받은 때
- 4.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
- 5.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
- ⑤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.
- 1. 10년 이상 20년 미만: 10일
- 2. 20년 이상 30년 미만: 20일
- 3. 30년 이상: 20일
- ⑥ 장기재직휴가는 제5항 각 호의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(移越)하여 사용할 수 없다.
- ⑦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.
- ⑧ 직장 내에서 성희롱·성폭력·폭언·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직장 격리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

- ⑨ 공무원은 자녀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- ⑩ 영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일(日)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. 다만,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. 또한,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,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.
- 제19조(휴가기간의 초과)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.
- 제20조(공무외의 국외여행)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선 서 문(제2조제2항 관련)

선 서

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, 국가를 수호하며,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.

[별표 2]

선서의 절차 및 방법(제2조제3항 관련)

- 1. 선서의 시기 및 장소
 - 가.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의장 앞에서 선서 를 하고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.
 - 나.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.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.
 - 다.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.
- 2. 선서의 방식
 - 가.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.
 - 나.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.
- 3.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담당한다.

[별표 3]

공직자의 행동률(제4조제2항 관련)

	대	민	관	계			대	내	관	계
0	언어는	부드럽	게 한다			0	시간을	엄수한	다.	
0	항상 웃	-으며 최	가별 없¢] 대한	다.	0	어려운	동료를	돕는디	
0	전화는	직장과	이름을	먼저 불	∤ 히고	0	근검절약	약한다.		
	공손히	받는다	•			0	남에게	겸손한	다.	
0	문의는	공손ㅎ	하게 안!	내는 천]절히	0	협조는	적극적.	으로 힌	난다.
	한다.					0	상사를	존경하.	고 부히	를 아낀다.
0	민원은	가능한	방향으로	로 검토	한다.	0	직장환?	경을 명	랑하게	한다.
0	민원은	신속공	정하게	경제부	담 없	0	복장과	용모는	단정히	한다.
	도록 ㅊ	리한다	•			0	책을 읽	고 인격	[도야에	힘쓴다.
0	시민의	존경과	· 신뢰를	받도.	록 처	0	남의 의	견을 존	중한디	
	신한다.									
0	찾아오	는 시민	민은 우/	선적으	로 맞					
	이한다.									
0	어렵고	불우한	시민의	편에/	서 일					
	한다.									

[별표 4]

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(제14조 관련)

- 1.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
 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 2(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)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(즉,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)
- 2.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
 -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: 가산 안함
 -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: 2일 가산
 - ※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

[별표 5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18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	본인	5
결 혼	자녀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중] 기-	본인 및 배우자	5
회 갑	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	1
출 산	배우자	10
입양	본인	20
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· 조부모·외증조부모·외조부모	3
사 망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	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1
탈상	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· 조부모·외증조부모·외조부모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
^{*} 비고 : 1.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^{2.}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.

[별첨]

관계법령 발췌서

「지방자치법」[시행 2022.1.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1.12., 전부개정]

- 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 -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·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- 제104조(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) ① 사무처장·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 - ② 사무직원의 임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을 적용한다.

「지방공무원법」[시행 2022.1.13.] [법률 제18472호, 2021.10.8., 일부개정]

- 제6조(임용권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[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 및 지방의회의 의장[시·도의회의 의장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회의 의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·휴직·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(이하 "임용권"이라 한다)을 가진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,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 회의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③ 임용권자(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・보관하여야 한다.
- 제30조의3(겸임)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·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47조(복무 선서)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.

「지방공무원 복무 규정」

- 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,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때라도 최장 44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)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- 1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(「모자보건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. 이하 제3호를 제외하 고 같다)·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
 - 2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
 - 3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·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
 -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
 - 1.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

- 2.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- 3.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 일까지
- 4.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
-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.
-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.
-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,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
-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.
- 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(이하 이 항에서 "어린이집등" 이라 한다)의 휴업·휴원·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
- 2.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
- 3. 미성년자이거나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(이하 이조에서 "장애인"이라 한다)인 자녀·손자녀의 병원 진료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)에 동행하는 경우
- 4. 질병, 사고,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, 외조부모,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, 배우자,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

- ①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, 자녀(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)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(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)까지 유급으로 한다.
- ①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
- ⑩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.
- ③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[배우자,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]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(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)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.